瑞山市行政洞·理의名稱·管轄區域및洞·理長定數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 提出日字 : 1998. 9. 16

. 提案理由

○ 작은 지방정부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오산동)을 석남동으로 통폐합 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및 동장정수중 "석남동"란의 관할구역중 "예천동" 다음에 "오남동(1,2,3,4통), 장동(1,2통), 덕지천동" 을 두고, "오산동"란을 삭제 【별표1】

. 檢討意見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 서산시 기구개편 계획에 의거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과 하부기관설치 조례가 폐지 내지 통폐합 및 기구 축소 조정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 인구 5천명미만인 기존 오산동을 석남동으로 폐치분합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행정절차법 제41조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법적 선행절차를 거쳐서 개정되어야 할 개정 조례안으로

○ 서산시공고 1998-258(98.9.4)호로 행정절차법상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행정상 입법예고는 되었으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읍·면·동 폐치분합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각시도지사에게 시달하고, 충남도지사가(98.6.20)통보한 지침을 각시군에서 받아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參考事項

○ 폐치·분합의 내용

- 「폐」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편입(예 : 1963년에 강원도 금화군을 폐지하여 그 구역을 철원군에 편입한 경우)
- 「치」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일부를 할애하여 새로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설립(예 : 읍을 종전의 군지역에서 분리하여 시로 설립하는 경우, 즉 1989년 장승포읍이 거제군에서 분리하여 장승포시로 승격된 경우)
- 「분」 :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아주 폐지하고, 그 구역을 나누어 수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설립(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분할의 예는 없음. 다만, 1980년 당시 최대군이었던 양주군을 나누어 양주군과 남양주군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치」에 해당되며 만약 원래의 양주군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분」에 해당된다 하겠음)
- 「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합병하여 그 구역에 새로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예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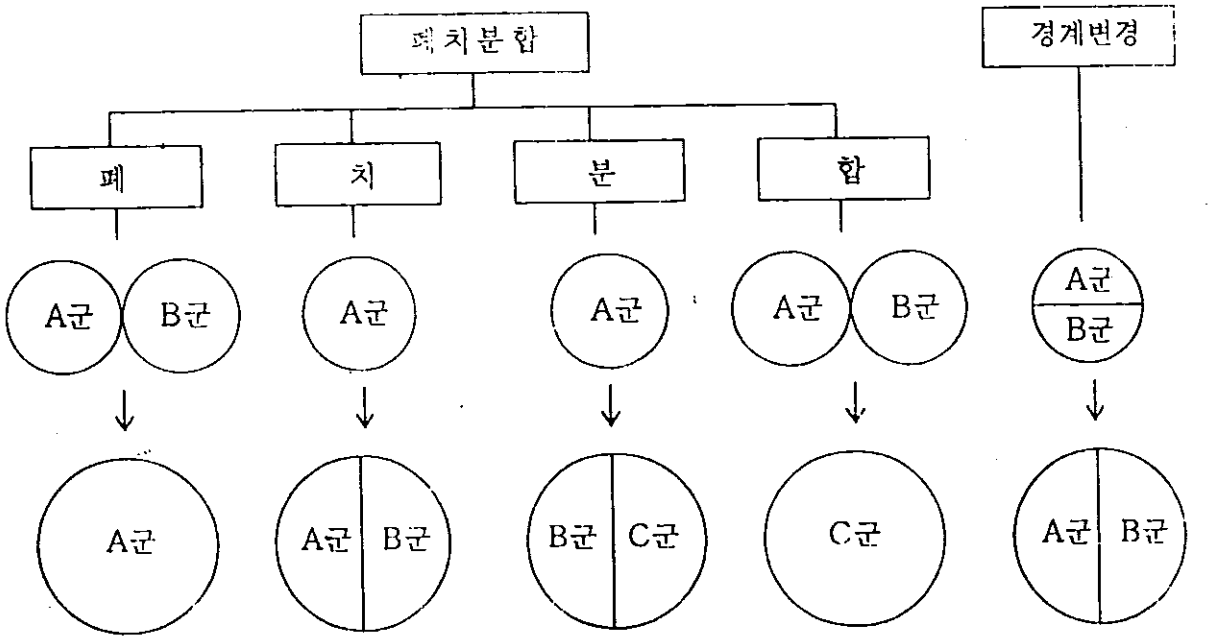
〈구역변경의 유형〉